

B-17 : 임원퇴직금 제도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 제 1조 【목적】 본규정은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를 말한다.
- 제 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제 2조에서 선임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임원대우는 사원 퇴직금 지급기준과 같다.
- 제 4조 【지급기준】 1.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월보수와 퇴직일 이전 1년동안 지급된 상여금의 평균을 합한 금액(이하 ‘평균보수’라 한다)에 재임기간에 따른 기준지급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2. 해외재임중 퇴직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본사에서 근무할 경우의 평균보수를 적용한다.
3. 기준지급율은 “별표”와 같다.
4. 재임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치 않는다.
5. 1년을 초과하는 재임기간 중 연 미만의 월수는 월할계산에 의하며 월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 제 5조 【재임기간의 산정】 1. 재임기간의 산정은 주주총회 선임결의일로부터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2. 본인의 희망 및 기타사정으로 인한 퇴직서는 주주총회 선임결의일로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3. 주주총회 해임결의로 인한 퇴직서는 주주총회 선임결의일로부터 주주총회 해임결의일까지로 한다.
4. 임기종료후 재임되었을 경우 전임기간의 근무연수는 다음 임기의 근무연수에 가산한다.
- 제 6조 【지급제한】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 해임결의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퇴직할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7조 【권리의 양도금지】 퇴직금의 수령권은 본인에게 있으면,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 제 8조 【적용의 예외】 임원이 퇴직금에 대하여 법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시 행 일) 1991. 3. 15.

(시 행 일) 1997. 3. 14.

(별표)

임원 퇴직금 지급율표

직 위	지 급 율
대표이사 회 장 대표이사 부회장 대표이사 사 장 이 사 감 사	재임 매 1년 에 대하여 평균보수 1, 2개월분